의안번호	2215482
의 뢰 인	위성곤의원
회 답 일	2026.3.26.
추계번호	25D7080

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Ⅰ. 비용추계 결과

❑ 개정안에 따라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에 따른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는 경우 재정수입의 감소는 다음과 같음

○ 전자적 방법 및 비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등기기록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추세 유지(**시나리오 1): 3,727억 500만원(연평균 745억 4,100만원)**

○ 비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등기기록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건수의 50%가 감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만큼 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등기기록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건수 증가(**시나리오 2): 3,831억 1,000만원 (연평균 766억 2,200만원)**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수수료 면제액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		2027	2028	2029	2030	2031	합 계	연평균
수수료 면제액	시나리오1	74,541	74,541	74,541	74,541	74,541	372,705	74,541
	시나리오2	76,954	76,775	76,610	76,457	76,315	383,110	76,622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Ⅱ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9조제1항 (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)	인터넷,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등기기록 사항을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함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1	안 제19조제1항(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❑ 등기사항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수수료[1]는 인상되지 않는 것으로 가정

❑ 대법원 자료를 바탕으로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를 추계하되, 다음과 같이 시나리오별로 구분하여 추계

○ **(시나리오 1)** 전자적 방법 및 비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등기기록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추세 유지

○ **(시나리오2)** 비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등기기록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건수의 50%가 감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만큼 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등기기록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건수 증가

- 개정안이 시행되는 경우 비전자적 방법 이용 빈도가 감소하고 수수료가 면제되는 전자적 방법 이용 빈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, 본 추계에서는 비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등기기록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건수의 50%가 감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만큼 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발급 건수가 증가한다고 가정

1) 등기사항 열람 및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수수료

(단위: 원)

	등기사항 열람 시	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시
열람 및 교부 수수료	1,200원	1,200원
무인발급기 이용 시 수수료	-	1,000원
인터넷 이용 시 수수료	700원	1,000원

주: 복사물 교부 시 20장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 1장마다 수수료 50원 납부
자료: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(대법원규칙 제3152호)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❑ 등기사항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시 1건당 평균 수수료는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

❑ 안 부칙에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,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❑ 개정안에 따라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으로 등기기록 열람과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이 이루어진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고, 이에 따라 재정수입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

❑ 2020~2024년 등기기록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수수료수입액은 다음의 표와 같음

○ 비전자적 방법을 통한 등기 열람 및 발급 수수료 수입액 연평균 증감률: −7.4%

○ 전자적 방법을 통한 등기 열람 및 발급 수수료 수입액 연평균 증감률: 0%

[표 2] 수수료 수입액 추이: 2020~2024년

(단위: 백만원)

		2020	2021	2022	2023	2024	연평균증가율
수수료 수입액	비전자적 방법 이용	8,261	8,065	6,956	6,276	6,077	−7.4%
	전자적 방법 이용	74,014	78,829	72,665	73,226	73,973	0%
	합 계	82,275	86,894	79,621	79,502	80,050	−0.7%

주: 전자적방법 이용에 따른 수수료수입액에는 「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」 제7조제7항에 따른 인터넷 열람 수수료 면제액이 포함[2)]

자료: 대법원 자료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❑ **(시나리오 1)** 개정안에 따라 전자적 방법에 의한 등기기록 열람 및 발급 시 수수료를 면제하는 경우 전자적 방법에 발급 수수료 수입액은 2020~2024년 5년간 평균인 745억 4,100만원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하고, 향후 5년간

2) 「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」 제7조(수수료 면제) ⑦제5조의5의 전자신청에 의한 등기사건이 처리완료된 후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당해 등기사건에 대하여 신청하는 제2조제2항의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수수료 또는 제3조제2항의 등기기록 열람수수료를 1회에 한하여 면제한다.

수수료 면제에 따른 재정수입감소액을 추계

[표 3] 시나리오 1: 전자적 방법 수수료 면제 및 비전자적 방법 발급건수 유지 시 재정수입감소 추정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 계
수수료 수입액	74,541	74,541	74,541	74,541	74,541	372,705

자료: 대법원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❑ **(시나리오 2)** 개정안에 따라 전자적 방법에 의한 등기기록 열람 및 발급 시 수수료를 면제하는 경우 비전자적 방법 발급의 50%를 전자적 방법으로 변경하여 발급한다고 가정하여 향후 5년간 수수료 면제에 따른 재정수입감소액을 추계

○ 전자적 발급에 따른 수수료 면제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와 비전자적 발급건수 감소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를 합산하여 추계

[표 4] 시나리오 2: 전자적 방법 수수료 면제 및 비전자적 방법 발급건수 감소 시 재정수입감소 추정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
비전자적발급에 따른 수입액(A)	2,413	2,234	2,069	1,916	1,774	10,405
전자적발급에 따른 수수료 수입액(B)	74,541	74,541	74,541	74,541	74,541	372,705
합계 (C=A+B)	76,954	76,775	76,610	76,457	76,315	383,11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❑ 개정안에 따라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에 따른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는 경우 재정수입 감소액은 시나리오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추계됨

○ **(시나리오 1)**: 3,727억 500만원(연평균 745억 4,100만원)

○ **(시나리오 2)**: 3,831억 1,000만원(연평균 766억 2,200만원)

[표 5] 개정안에 따른 수수료 면제액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 계	연평균
시나리오1	74,541	74,541	74,541	74,541	74,541	372,705	74,541
시나리오2	76,954	76,775	76,610	76,457	76,315	383,110	76,622

Ⅳ. 부대의견

❑ 없음

Ⅴ. 작성자

❑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보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임지원	김안나

❑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임지원	02-6788-4664	img1@assembly.go.kr